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 요건 및 생활용수·음용수 공급에
대한 대응 구체화 등〉

■ 정점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985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세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점식의원 등 15인
2. 제안연월일 : 2026. 3. 31.
3. 회부연월일 : 2026. 4.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유지 등 가뭄 대응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생활용수 및 음용수 확보와 같은 실질적인 대응 체계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하고, 생활 용수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용수 또는 음용수 공급에 대한 대응을 구체화하고, 섬 지역 등 용수 확보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가뭄 대책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의 책무에 ‘가뭄으로 인한 생활용수 및 음용수 공급 차질의 예방·대응’을 명시하고(안 제3조제1항),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 요건 및 생활용수·음용수 공급에 대한 대응을 구체화하며(안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수자원관리자가 용수 확보에 취약한 도서지역에 생활용수 또는 음용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조(책무)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u>자연재해의</u>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① ----- ----- ----- ----- <u>가뭄으로 인한 생활용수 및 음용수 공급 차질의 예방·대응 등 자연재해의</u>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u>가뭄 재해가</u>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	제33조(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① ----- ----- <u>가뭄으로 인하여 생활용수 또는 음용수 공급에 중대한 차질</u> ----- ----- -----

현행	개정안
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u>빗물모으기 시설 설치</u> 등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 <u>생활용수</u> 및 <u>음용수 확보</u> , 대체 수원 확보, <u>도서지역 상수도 확충</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수자원관리자는 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u>취약한 도서지역에 생활용수 및 음용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u>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202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릉시의 누적 강수량이 평년 강수량(822.7mm) 대비 약 32.6% 수준인 267.9mm에 불과하면서, 강릉시에서는 주요 취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급감하는 등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였음.

[2025년 강릉시 가뭄 발생 경과]

날 짜	내 용
6. 9.	오봉저수지 농업용수 제한급수 (2일 급수 / 2일 단수)
7. 1.	오봉저수지 농업용수 제한급수 확대 (2일 급수 / 3일 단수)
7. 4.	가뭄 "관심" 단계 진입 (기상청)
8. 9.	가뭄 "주의" 단계 진입 (기상청)
8.12.	가뭄 "경계" 단계 진입 (기상청)
8.20.	계량기 50% 잠금 실시
8.21.	가뭄 "심각" 단계 진입 (기상청)
8.23.	오봉저수지 농업용수 공급 조기 종료
8.30.	가뭄 재난사태 선포
9. 1.	오봉저수지에 대한 윤반급수 시작
9.12.	오봉저수지 역대 최저 저수율(11.5%) 기록
9.22.	가뭄 재난사태 해제

(자료 :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 강릉 가뭄 백서」, p.25-27)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간한 「2025년 강릉 가뭄 백서」에 따르면, 당시 가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크게 생활용수 피해와 농작물 피해가 있는데, 가뭄으로 인한 저수지의 저수율 저하로 수도계량기 잠금 캠페인 및 시간제 급수 등을 시행하여 생활용수 사용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농업용수 제한급수를 저수지의 저수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282개 농가에서 약 163ha의 면적에 해당하는 농작물 피해, 21개 농가에서 약 5.8ha의 면적에 해당하는 산림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¹⁾.

현행법은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1)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 강릉 가뭄 백서」, p.31

급수·발전 등 가뭄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를 상습가뭄재해지역²⁾으로 지정·고시하여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2025년 강릉시 가뭄에서 나타난 생활용수 부족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체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생활용수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의 책무에 가뭄으로 인한 생활용수 및 음용수 공급 차질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명시하고, 관련 내용을 상습가뭄재해 지역 지정 요건 등에 구체화하며, 수자원관리자³⁾의 용수 확보가 취약한 도서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이 있는 가뭄 대책을 도모하려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국가의 책무에 ‘가뭄으로 인한 생활용수 및 음용수 공급 차질의 예방·대응’을 명시하는 것(안 제3조제1항)과 관련하여, 해당

2)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 현황은 10페이지 참고

3) 「자연재해대책법」 제30조(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발전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 등 수자원을 관리하는 자(이하 “수자원관리자”라 한다)는 가뭄으로 인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發電)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수자원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수해자가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 등에 관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조항이 가뭄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다른 자연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대비해야 할 국가의 종합적인 책무를 명시하는 성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3조제1항은 모든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의 예방 및 대비 책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의 각 호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소관 업무별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무를 규정하는 형식을 채택하고 있고, 그 중 가뭄대책이 포함되어 있음⁴⁾.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가뭄으로 인한 생활용수 및 음용수 공급 차질의 예방·대응과 관련된 내용을 국가의 책무에 명시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법 제3조제1항보다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가뭄대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명시하는 것이 법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대해 현행법 제3조는 자연재해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국가의 책무이므로 특정 자연재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자연재해와 관련된 조항에서 규정하는 것 타당하며, 개정안에서 사용하는 ‘음용수’라는 용어는 ‘생활용수’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별도로

4)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가뭄대책

가.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나.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유지

다. 가뭄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라. 각 유관기관 지원·협조 체제 구축

마. 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

6. - 9. (생략)

구분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관계부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도 국가의 책무에서는 특정 재해가 아닌 자연재해 전반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둘째,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는 것(안 제33조 제1항)과 관련하여, 현행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 대상 및 요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은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 대상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가뭄으로 인하여 생활용수 또는 음용수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로 구체화함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 대상의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보임.

또한, 현행법 시행령이 구체화하고 있는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 요건을 보면, 농업용수의 부족으로 급수대책이 필요하거나, 공업용수의 부족으로 급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포함되는데, 개정안은 생활용수(음용수)의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어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요건도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 요건]

1.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2.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농업용수 부족 등으로 급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생활용수(음용수)의 확보 등 시장·군수·구청장의 중장기 대책 수립 등 대응을 구체화하는 내용(안 제33조 제2항)만을 반영하고,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요건 및 생활용수 공급 대응의 구체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현행 지정 요건을 반영하여 농업용수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정안에 따를 경우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해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등이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셋째, 수자원관리자가 용수 확보에 취약한 도서지역에 생활용수 또는 음용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안 제33조제4항)과 관련하여, 용수 확보 취약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의 필요성은 있으나 해당 조문이 상습가뭄재해지역 관련 조항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용수를 확보하기에 취약한 도서지역’을 ‘도서지역 및 상습가뭄
재해지역 등 용수를 확보하기에 취약한 지역’으로 수정하고, 구체적인
우선 지원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도 해당 조문의 내용과 법 체계를 고려하여 ‘도서지역’을
‘도서지역 및 상습가뭄재해지역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9

참고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 현황

(면적단위 : ha=1만m²)

지 역	지 구	위 치	지정일자	면적
합 계 : 29개소				
인천	옹진군(1)	가을	백령 가을	'25.4.11. 70
강원	횡성군(2)	두원	둔내 두원	'15.8.4. 35.0
		오산	공근 오산	'15.8.4. 5.5
충남	예산군(3)	마사	광시 마사	'25.4.11. 7.5
		하탄방	대흥 하탄방	'25.4.11. 5.1
		상하	삽교 상하	'25.4.11. 10.0
	홍성군(2)	벽계	광천 벽계	'25.4.11. 57
		신촌	광천 신진	'25.4.11. 11
	논산시(1)	삼전	가야 삼전	'25.6.25. 39
전남	신안군(2)	도고	비금면 가산리	'17.11.13. 102.0
		조진	도초면 이곡리	'17.11.13. 107.0
	여수시(1)	봉통	남면 봉통	'25.4.16. 3.6
경북	영양군(7)	구통	청기 구매	'15.7.4. 45.0
		토곡	청기 토곡	'15.7.4. 23.0
		오리	일월 오리	'15.7.4. 13.0
		산운	청기 산운	'15.7.4. 30.0
		양항	입암 양항	'15.7.4. 35.0
		산해	입암 산해	'15.7.4. 30.0
		용화	일월 용화	'15.7.4. 26.0
	문경시(1)	평지	산양 평지	'21.12.22. 39.0
	경주시(1)	남천	탑동 남천	'18.12.31. 67.0
	상주시(2)	효곡	공성 효곡리	'23.3.22. 89.0
		한들	화서 사산리	'23.3.22. 4.0
경남	합천군(3)	청현	가야 청현	'22.4.4. 81.0
		용흥	삼가 용흥	'22.5.9. 87.0
		마장	삼가 하판리	'23.4.12. 25.3
제주	제주시(3)	평대	구좌 평대	'25.4.10. 85.4
		봉성	애월 봉성	'25.4.10. 103.3
		고산2	한경 고산리	'25.4.10. 70.5

(자료 : 행정안전부)